

대만, 「포장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」 개정 초안 발표



포장식품 라벨에 영양성분 표시 관련 규정 개정, 별도 규정 없는 특수영양식품도 동 규정 준수해야

2023년 3월, 식품의 영양 정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「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(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)」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 이에 대만 위생복지부(衛生福利部)는 본 규정의 개정 초안을 공고함.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

1. **배경:** 본 준수사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, 포장식품 관련 업계가 라벨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, 현재 중국 국민들의 영양 현황을 고려하여 두 번째 개정 초안을 발표함

2. 적용 범위

- 본 준수사항은 **포장식품** 표시의 영양표시에 적용됨
- **특수영양식품¹⁾**의 영양 표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, 본 준수사항의 규정을 적용함

1) 특수 인구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영양소를 조정해서 제조된 식품

3. 주요 변경 사항

- 1) (개정 규정 2항) 본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
- 2) (개정 규정 3항) 본 준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
- 3) (개정 규정 4항)
 - **영양성분 함량 표시의 수치표시방법 추가**
 - **섭취에 따라 보충 가능한 영양성분²⁾ 표시 개정**
 - **생리 기능 관련 영양성분 함량 표시 기준 추가**
 - **요오드첨가염 표시 삭제**
 - **표 7에 기재된 식품을 영양 표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**
- 4) (개정 규정 5항) 섭취하기 전에 물을 첨가해야 하거나 희석해야 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측정 기준을 임의로 개정
- 5) (개정 규정 6항) 새로운 액체 식품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, 텍스트 설명을 추가해야 함
- 6) 표3, 표4 및 표7의 내용을 수정함

2) 단백질, 식이섬유, 비타민, 엽산, 칼슘, 철분 등

[개정 규정 4항 기준 비교 대조표]

	「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」 개정 초안(2023.08)	「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」 현행(2023.03)
영양성분 함량 표시	식품에 함유된 열량, 또는 영양소 함량의 수치는 식품의 중량, 용량, 수량 등으로 표기함 (추가)	-
보충 가능한 영양성분 표시	보충 가능한 영양성분을 영양소로 통칭 (수정)	보충 가능한 영양성분: 식이섬유, 비타민A, 비타민B1, 비타민B2, 비타민C, 비타민E, 칼슘, 철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충 가능한 영양소 함량에 포함함
생리 기능 관련 영양 강조 표시	(고체(반고체) 식품) 100g 당 영양소 함량, 표5에 기재된 식품의 경우 30g 당 영양소 함량, 표6에 나열된 영양소의 경우 1g 당 함유된 영양소(단백질 및 식이섬유 제외) 함량이 표4의 두 번째 열에 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함 (추가) (액체 식품) 100ml 당 영양소 함량이 표4의 세 번째 열에 표시된 기준 이상이거나, 100kcal 당 영양소 함량이 표4의 네 번째 열에 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함 (추가)	-
요오드첨가염 표시	-	요오드산염, 요오드첨가염 등 동일한 의미를 가진 소금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100만분의 12에 도달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「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」에 부합해야 함 (삭제)
표 7에 기재된 식품의 영양 표시 방법	표 7에 기재된 식품은 '높음, 많음, 강화함, 풍부함, <u>비교적 높음, 비교적 많음</u>, 또는 동일한 의미의 글자' (수정)로 영양 표시가 불가함	표 7에 기재된 식품은 '높음, 많음, 강화함, 풍부함, <u>원산지, 공급원, 함유로 영양</u> 표시가 불가함

4. 진행 일정

- 시행일(예정): 2024년 1월 1일
-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는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의견을 수렴함

대만으로 포장식품 수출 시,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영양표시 규정 준수해야

대만으로 포장식품 수출 시 식품 라벨의 영양표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초안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해야 함. 특히,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본 준수사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사전에 준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

출처

위생복지부(衛生福利部) 식품약품관리서(食品藥物管理署), 第二次預告修正「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」草案, 2023.08.17